

## Solumer 883

분류번호 SLM883

## 1.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

## 가. 제품명

Solumer 883

## 나.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

- 용도 : 범용 플라스틱의 원료
- 사용상의 제한 : 자료없음

## 다. 제조자/공급자/유통업자 정보

## ○ 공급회사명

SK종합화학(주)

## ○ 주소

본사)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 
공장) 울산광역시 남구 상개동 975-1 번지  
연구소)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25

## ○ 정보제공서비스/긴급연락 전화번호

042-609-8831

## ○ 담당부서

SK이노베이션(주) 화학연구소 화학기술 Lab

## 2. 유해·위험성

## 가. 유해·위험성 분류

해당없음 : 해당없음

## 나.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

- 그림문자
- 신호어
- 유해·위험 문구
- 
- 예방조치문구
- ◎ 예방문구

- ◎ 대응문구
- ◎ 저장문구
- ◎ 폐기문구

다 유해·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·위험성(예 : 분진폭발 위험성)

- NFPA 등급 (0 ~ 4 단계)
- 보건 : 0, 화재 : 0, 반응성 : 0

### 3.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
화학물질명	관용명 및 이명	CAS번호	함유량(%)
Ethylene-1-octene copolymer	Ethylene-1-octene copolymer	26221-73-8 / KE-13674	>=99
additive	additive	- / -	=<1

### 4. 응급조치 요령

#### 가. 눈에 들어갔을 때

- 눈을 문지르지 마시오.
-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여 적어도 15분 동안 눈을 씻어내시오.

#### 나. 피부에 접촉했을 때

-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벗고 즉시 적어도 15분 동안 비누와 물로 씻어내시오.
- 오염된 피복은 재사용 전에 충분히 세탁하십시오.

#### 다. 흡입했을 때

- 다량의 증기나 미스트에 노출되었을 경우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십시오.
- 필요에 따른 조치를 취하십시오.

#### 라. 먹었을 때

- 구토를 유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사의 조언을 받으시오.
- 즉시 물로 입을 씻어내시오.

#### 마. 급성 및 지연성의 가장 중요한 증상/영향

-

#### 바. 응급처치 및 의사의 주의사항

- 오염상황을 의료관계자에게 알려 그들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.

## 5. 폭발·화재시 대처방법

### 가. 적절한 (및 부적절한) 소화제

- 소형 화재: 건조모래, 건조화학적제, 적절한 포말, 물분무, CO2 (적절한 소화제) 대형 화재: 물분무/안개, 적절한 포말 (적절한 소화제) 고압주수 (부적절한 소화제)
- 직사주수를 사용한 소화는 피하십시오.

### 나.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(예, 연소 시 발생 유해물질)

- 열, 스파크, 화염에 의해 점화할 수 있음
-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
-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
- 화재시 자극성,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
- 물질의 흡입은 유해할 수 있음
- 일부 액체는 현기증, 질식을 유발하는 증기는 발생할 수 있음

### 다.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

- 화재가 완전히 진화될때까지 충분한 양의 물로 용기를 냉각시키시오.
- 물질 자체 또는 연소 생성물의 흡입을 피하십시오.
- 주변 환경에 적합한 진화 방법을 찾아 사용하십시오.
- 필요시 적절한 보호장비를 착용하십시오.

## 6.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

### 가.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

- 밀폐된 공간에 출입하기 전에 환기를 실시하십시오.
-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작업하고 바람을 안고 있는 사람을 대피시키시오.
- 누출지역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용기를 이동하십시오.
-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십시오

### 나.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

- 누출물이 하수시설, 수계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시키시오.
- 누출량이 많은 경우 119나 환경부, 지방환경관리청, 시·도(환경지도과)에 신고하십시오.

### 다. 정화 또는 제거 방법

- 다량누출 : 저지대를 피하고 바람과 반대방향에 있도록 하시오. 누출물질의 처리를 위해 제방을 축조하여 관리하십시오.

- 기준량 이상 배출 시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에 배출 내용을 통지하십시오.
- 폐기물관리법(환경부)에 의해 처리하십시오.
- 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 적당한 용기에 수거하십시오.
- 작은 고체상 유출 : 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 적당한 용기에 수거하십시오.
- 적당한 용기에 쓸어 담고 오염된 표면을 청소하십시오.

## 7. 취급 및 저장방법

### 가. 안전취급요령

-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취급하십시오.
- 사용 전에 사용설명서를 입수하십시오.
-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만 취급하십시오.

### 나. 안전한 저장 방법(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)

- 직접적으로 열을 가하지 마시오.
-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하십시오.
- 원래의 용기에만 보관하십시오.
-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밀폐하여 놓으시오.
- 정전기를 방지하고 보일러 등의 열원근처나 가연물 주위는 피해서 보관하십시오.

## 8.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

### 가. 화학물질의 노출 기준,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

- 국내노출기준
- 자료없음
- ACGIH노출기준
- 자료없음
- 생물학적 노출기준

### 나. 적절한 공학적 관리

- 사업주는 가스, 증기, 미스트, 흠 또는 분진이 발산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공기 중에 이들 함유농도가 보건상 유해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가스 등의 발산을 억제하는 설비 또는 가스 등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.

### 다. 개인 보호구

### ○ 호흡기보호

- 사용빈도가 높거나 노출이 심한 경우에는 호흡용 보호구가 필요함.
- 호흡보호는 최소농도부터 최대농도까지 분류됨.
- 사용전에 경고 특성을 고려하시오.
- 분진, 미스트, 흡용 호흡보호구
- 공기여과식 호흡보호구(고효율 미립자 여과재)
- 전동팬 부착 호흡보호구(분진, 미스트, 흡용 여과재)
- 고효율 미립자 필터가 부착된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
- 미지농도 또는 기타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: 송기마스크(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), 공기호흡기(전면형)

### ○ 눈보호

- 비산물 또는 유해한 액체로 부터 보호되는 보안경을 착용하시오.
-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설비와 비상세척설비(샤워식)를 설치하시오.

### ○ 손보호

- 적합한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.

### ○ 신체보호

- 적합한 보호의를 착용하시오.

## 9. 물리화학적 특성

### 가. 외관(물리적 상태, 색 등)

- 성상 : 고체
- 색 : 흰색 또는 우유빛

### 나. 냄새

무취

### 다. 냄새 역치

자료없음

### 라. pH

자료없음

### 마. 녹는점/어는점

40~85°C/30~75°C

### 바. 초기 끓는점과 끓는 점 범위

해당없음

### 사. 인화점

자료없음

### 아. 증발 속도

자료없음

**자. 인화성(고체, 기체)**

자료없음

**차.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/하한**

자료없음

**카. 증기압**

해당없음

**타. 용해도**

크실렌, 톨루엔, 트리클로로에틸렌, 고열의 미네랄 오일에서 용해됨

**파. 증기밀도**

해당없음

**하. 비중**

<0.890 g/cc

**거. n 옥탄올/물 분배계수**

자료없음

**너. 자연발화 온도**

350°C

**더. 분해 온도**

자료없음

**러. 점도**

190°C, 100 1/s 에서 100 PaS 이상

**머. 분자량**

자료없음

**10. 안정성 및 반응성**

**가. 화학적 안정성**

- 상온, 상압에서 안정함.

**나. 유해 반응의 가능성**

- 상온, 상압에서 안정함.

**다. 피해야 할 조건(정전기 방전, 충격, 진동 등)**

- 열, 화염, 스파크 및 기타 점화원을 피할 것.

**라. 피해야 할 물질**

- 염소(액체), 과산화수소, 질산(흙), 강산화제, 과말간산칼륨

**마.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**

- 심한 연기 및 자극성 흙

**11. 독성에 관한 정보**

**가.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**

○ 호흡기

- 자료없음

○ 경구

- 자료없음

○ 눈.피부

- 자료없음

**나. 건강 유해성 정보**

○ 급성 독성 물질(노출 가능한 모든 경로에 대해 기재)

- \* 경구 독성
  - 자료없음
- \* 경피 독성
  - 자료없음
- \* 흡입 독성
  - 자료없음

○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

- 자료없음

○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

- 자료없음

○ 호흡기 과민성 물질

- 자료없음

○ 피부 과민성 물질

- 자료없음

○ 발암성물질

- \*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
  - 자료없음

- \* IARC
- 자료없음
- \* OSHA
- 자료없음
- \* ACGIH
- 자료없음
- \* NTP
- 자료없음
- \* EU CLP
- 자료없음

○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

- 자료없음

○ 생식독성 물질

- 자료없음

○ 표적장기·전신독성 물질(1회 노출)

- 자료없음

○ 표적장기·전신독성 물질(반복 노출)

- 자료없음

○ 흡인유해성

- 자료없음

다. 독성의 수치적 척도(급성 독성 추정치 등)

-

## 12. 환경에 미치는 영향

가. 수생·육생 생태독성

- 어류
- 자료없음
- 갑각류
- 자료없음
- 조류
- 자료없음

나. 잔류성 및 분해성

- 잔류성
- [Ethylene-1-octene copolymer] : (Not applicable)
- 분해성
- 자료없음

다. 생물 농축성

- 생물



- 농축성
- 자료없음
- 생분해성
- 자료없음

**라. 토양 이동성**

- 자료없음

**마. 기타 유해 영향**

- 자료없음

**13. 폐기시 주의사항**

**가. 폐기방법**

- 2종류이상의 지정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각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감량화 안정화 처리할 수 있음.
- 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로 사전 처리할 것.
- 소각 처리할 것.

**나. 폐기시 주의사항(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)**

-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(사업장폐기물배출자)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 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, 폐기물처리업자,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생처리 하는 자,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야 함.
- 폐기물관리법상 규정을 준수할 것.

**14. 운송에 필요한 정보**

**가. 유엔 번호**

- 자료없음

**나. 유엔 적정 선적명**

- 자료없음

**다.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**

- 자료없음

**라. 용기등급 (해당하는 경우)**

- 자료없음

**마. 해양오염물질(해당/ 비해당)**

- 해당없음

**바.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**

- 지역 운송 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름.

- DOT 및 기타 규정에 맞게 포장 및 운송.
- 화재 시 비상조치의 종류 : 자료없음
- 유출 시 비상조치의 종류 : 자료없음

## 15. 법적 규제현황

### 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

- 작업환경측정물질
- 해당없음
- 노출기준설정물질
- 해당없음
- 관리대상유해물질
- 해당없음

### 나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

- 유독물질
- 해당없음
- 배출량조사대상화학물질
- 해당없음
- 사고대비물질
- 해당없음
- 제한물질
- 해당없음
- 허가물질

### 다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

- 위험물에 해당되지 않음

### 라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

- 본 제품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[별표1]에 의해 지정폐기물 외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됨.

### 마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

-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
- 해당없음
- EU 분류 정보

- \* 확정분류  
결과
- 미분류
- \* 위험 문구
- 해당없음
- \* 예방조치  
문구
- 해당없음
- 미국 관리  
정보
- \* OSHA 규정  
(29CFR1910.119)
- 해당없음
- \* CERCLA 103 규정  
(40CFR302.4)
- 해당없음
- \* EPCRA 302 규정  
(40CFR355.30)
- 해당없음
- \* EPCRA 304 규정  
(40CFR355.40)
- 해당없음
- \* EPCRA 313 규정  
(40CFR372.65)
- 해당없음
- 로테르담 협약  
물질
- 해당없음
- 스톡홀름 협약  
물질

## 16. 기타 참고사항

### 가. 자료의 출처

-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-37호(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치 등에 관한 기준)에 근거하여 국내 관련 규제 법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작성함.
- 본 MSDS는 KOSHA, NITE, ESIS, NLM, SIDS, IPCS, NCIS 등을 근거로 작성하였음.

### 나. 최초작성일자

- 2015-05-29

### 다.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

개정횟수 : 1  
개정일자 : 2016년10월05일

**라. 기타**

- 이 정보는 근로자 건강, 환경, 안전을 보호하고자, 현재 가용할 수 있는 DB를 근거로 하여 작성하였음.